

# 파주금촌 금호어울림(조합원 취소분)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77-9720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 없음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5.13.)로부터 6개월 | 없음                                     | 미적용    |

|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 무순위(사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4.24.(금) | 2026.06.16.(화)   | 2026.06.22.(월) | 2026.06.25.(목) | 2026.06.27.(토)~<br>2026.06.29.(월) [3일간] | 2026.07.02.(목) |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br>인증서 | 금융<br>인증서 | 네이버<br>인증서 | KB국민<br>인증서 | 토스<br>인증서 | 신한<br>인증서 | 카카오<br>인증서 |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         |           | X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16.(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58**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4.(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43**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무순위(사후) 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06.22.(월)   | 2026.06.25.(목)   | 2026.06.27.(토)~2026.06.29.(월)   | 2026.07.02.(목) |
|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홍보관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36, 상가동 124호(금촌동)</li> <li>☎ 1877-9720</li> </ul> |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파주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5.13.)로부터 6개월간 적용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금촌2동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1,055세대 중 잔여 10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9월 예정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2025년 10월 31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아파트로 계약체결 후 공급대금 완납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br>(타입) | 잔여세대수 | 잔여세대 동·호 내역 |                              |
|------------|-----|-----------------|--------------|-------|-------------|------------------------------|
|            |     |                 |              |       | 동           | 호                            |
| 2026910158 | 01  | 026.9146        | 26           | 5     | 105         | 2714, 2715, 2716, 2717, 2718 |
|            | 02  | 046.7967        | 46           | 4     | 106         | 2501, 2502, 2503, 2703       |
|            | 03  | 059.8387B       | 59B          | 1     | 102         | 1804                         |
|            | 합 계 |                 |              | 10    | -           |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 약식표기<br>(타입) | 공급<br>세대수 | 동/라인          | 공급금액        |             |             | 계약금 (정액제)  | 잔 금 (공급금액 - 계약금)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26           | 5         | 105동 14~18호   | 25,474,000  | 156,226,000 | 181,700,000 | 5,000,000  | 176,700,000      |
| 46           | 4         | 106동 1~3호, 5호 | 75,241,000  | 236,059,000 | 311,300,000 | 10,000,000 | 301,300,000      |
| 59B          | 1         | 102동 4호       | 124,178,000 | 274,722,000 | 398,900,000 | 20,000,000 | 378,900,000      |

| 구 분              | 내 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li> <li>■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li> <li>■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 청약신청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li> <li>-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li> <li>-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li>-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ul> </li> </ul>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li> <li>■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li> </ul>  |

|   |   |
|---|---|
| <p>■ <b>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b></p> <p>-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p> <p>-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p> <p>*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p>■ <b>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b></p> <p>-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p> <p>-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p> <p>*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p>■ <b>당첨자 발표 서비스</b></p>  |   |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06.25.(목) ~ 2026.07.04.(토) (10일간)</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
| 문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06.2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홍보관 비치</li>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li> <li>※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li> </ul> |
|                   | ○    |             | 신분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li> </ul>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li> </ul>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li> </ul>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 무주택 소명 서류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li>■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분), 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접수 불가</li> </ul>  |
|                   | ○    |             |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li> </ul>  |
|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 주택에 비치)</li> </ul>  |
|                   | ○    |             | 신분증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li> </ul>  |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6.07.02.(목) (10:00 ~ 16:00) | 당사 주택홍보관<br>(경기도 파주시 평화로36, 상가동 124호(금촌동)) |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 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 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금은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 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 계좌           | 예금주                       |
|-------------|-------|-----------------|---------------------------|
| 분양 대금 납부 계좌 | 우리은행  | 1005-404-907629 | 파주시금촌2동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1인 |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개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 ※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을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금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공통<br>서류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은 주택홍보관에서 현금이나 수표 수납 불가함으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요망</li> </ul>  |
|          | ○    |     |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li> <li>■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li> </ul>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li> <li>■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li> </ul>               |

|   |   |              |                               |   |  |
|---|---|--------------|-------------------------------|---|--|
|   | ○ |              |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서명</li> </ul>  |
|   |   | ○            | 입주 대상자<br>자격 검증 서류 일체         | 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는 제외</li> </ul>  |
|   |   | ○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br>요구하는 서류(소명자료) | 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li> </ul>   |
|   | ○ |              | 전자 정부수입인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li> <li>※ 취급금융기관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에서 구매 및 출력</li> <li>■ 수입인지 구매금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대금 + 추가 선택 품목 대금)에 해당하는 인지세 금액의 절반</li> <li>※ 계약서 기재 금액 기준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br/><b>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으로 75,000원</b></li> <li>※ 사업주체 부담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를 별도로 발행하여 계약서에 첨부 예정</li> </ul> |
| ○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홍보관에 비치</li> </ul>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대리<br>계약시<br>추가<br>구비서류 | ○ |  | 인감증명서(위임용) | 계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li> <li>※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은 불가</li> </ul>  |
|                         |   |  | 인감도장       | 계약자<br>및<br>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li> <li>※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ul>   |
|                         |   |  | 신분증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li> <li>■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li> <li>■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li> </ul> |
|                         |   |  | 위임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li> </ul>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7.02.(목) 16:3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07.02.(목)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타입   | 26 | 46 | 59B | 비 고 |
|------|----|----|-----|-----|
| 공급가격 | 무상 | 무상 | 무상  | -   |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무상 시공됩니다. (발코니 비확장 선택 불가)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홍보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사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 공통사항

- 주택형별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기된 면적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에 표기되며, 주택홍보관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주택홍보관이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면적환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 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m<sup>2</sup>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 「주택법」 제57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정액제), 잔금(공급금액-계약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십시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십시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홍보관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청약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계약 전 주택홍보관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4.24.(금))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회사                |
|--------|---------------------------|---------------------|
| 상호명    | 파주시금촌2동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금호건설 주식회사           |
| 법인등록번호 | 284971-0002726            | 110111-0134877      |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12길 19, 2층(금촌동)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pjkhapt.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금촌2동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홍보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36, 상가동 124호(금촌동)

■ 청약 및 계약 문의 : ☎ 1877-9720

■ 홈페이지 : <https://pjkhapt.com>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주택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